

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33598
결재일자	2015. 12. 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국장	
전소연	전종대	강종식	12/30 소판수	
협 조				

---

## 2016 장애인 활동지원사업(구비추가) 자원 계획

---



**성 동 구**

**(사회복지과)**

# 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서 울 시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서울시 공약사업과 연계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홍 보 제 목 :</li> <li>● 중점 홍보사항 - -</li> </ul>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# 2016. 장애인 활동지원사업(구비추가) 지원 계획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생활과 자립생활 등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민선6기 약속사업 No. 190 “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”
-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201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」

## I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16. 1. 1. ~ 2016. 12. 31.
- 사업내용: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, 가사 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지원
- 사업대상: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(국비1등급) 중 국·시·비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

- 연도별 추진실적 (단위:명, 백만원)

구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
인 원(계)	48	52	62	64
- 월 20시간 지원	48	50	60	62
- 일 24시간 지원	-	2	2	2
예산액	119	161	119	120
집행액	81	107	112	-
(예산대비 집행율)	(68%)	(66%)	(94%)	

※ 민선6기 약속사업 No. 190 “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” 에 의거 대상자 매년 확대

III

**추진 세부계획**

■ **지원대상 및 급여량 ('15년) 62명 → ('16년) 64명**

지원시간	지원대상	지원인원	지원금액
20시간/월	만 18세이하 초중고등학생 장애인	62명	2,160,000원/인,년
	만 18세초과 외상(사지마비) 장애인	(증 2명)	(9,000원*20시간*12월)
130시간/월 (일24시간)	최중증 독거장애인 (인정점수 400점이상)	2명	16,632,000원/인,년 (9,000원*82시간+13,500원*48시간*12월)
<b>계</b>		<b>64명 (증 2명)</b>	<b>167,184,000원/년</b>

○ **지원시간 산출근거**

- (월 20시간) 국비 최저 지원시간에 준하여 산출
- (월130시간) 일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출
  - 국,시비 최대 지원시간: 월 591시간(30일중 25일정도)
  - 구비추가 시간: 월 130시간(30일중 5일정도/24시간×30일-590시간≒130시간)

○ **지원 방법**

- 2016년 소요액 167,184천원 , **예산액 120,761천원(소요액의 74%)**
- 구비 추가 지원은 국시비 지원 시간 소진 후 이용해야 함 (매년 64~70% 집행)
- 따라서,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 부족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사용 예정

■ **지원내용**

○ **지원급여 단가(시간)**

*※ 대상자 본인부담금 없음: 전액 지원*

구 분	2015년	2016년	비 고
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	8,810원	9,000원	- 15년 대비 90원(2.2%) 인상
② 22시 ~ 6시 이전 심야제공	13,210원	13,500원	- 15년 대비 290원(2.2%) 인상
③ 공휴일에 제공	13,210원	13,500원	- 심야, 공휴일 단가는 <b>1일 8시간 적용</b>

▶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(2016.1.1.시행) 적용

## ○ 지원종료

- 종료 사유: 사망, 포기, 타 구 전출, 타 구 소재지 제공기관 이용 등
- 종료 사유 발생 시 즉시 중지 처리

## ■ 지원절차

제공기관 추천(증가인원 2명, 최종증장애인 제외) → 사회복지과 심사(자격, 국고급여 이용실적확인, 이용계획 등) → 제공기관에 적격여부 결정 통지 → 서비스 개시(추천일 기준 익월부터 지원)

※ 제공기관: 3개소(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, 성동지역자활센터)

## ■ 소 요 액: 167,184,000원

\* 월 20시간 지원자

9,000원 x 20시간 x 12월 x 62명 = 133,920,000원

\* 월 130시간 지원자

; 9,000원\*82시간(주간)+13,500원\*48시간(공휴일,야간)\*12월\*2명 = 33,264,000원

## N

## 행정사항

### ■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

- (제공기관) 지원대상 추천: 2016. 1. 8.(금)
- (사회복지과)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: 2016. 1. 14.(목)

### ■ 사후관리

- 분기별 이용자 수, 이용내역 등 분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
- 보조금 불법사용 등 방지를 위해 정기 지도·감독 실시

붙임 국고보조·시비추가·구비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기준 및 지원시간 1부. 끝.